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7일, 김원이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4.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상정, 소위심
사보고, 찬반토론 및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원이 의원)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진흥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도 사업과 운영을 명확하게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운영비 외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명시하여 진흥원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 ⑤ (생략)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u>운영</u>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⑧ (생략)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사업 및 운영</u> ----- ----- ---. ⑦·⑧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9조의2¹⁾제1항에서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두도록 하고, 동조 제5항에서는 진흥원으로 하여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연구개발 등 지원
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동조 제6항을 살펴보면, 정부가 진흥원에 전부 또는 일부 출연·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진흥원이 법률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사업,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사업 등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 부족으로 사업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진흥원에 출연·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운영비 외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명시하여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12조²⁾를 살펴보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집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재량이 넓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2)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그 지원 및 집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임³⁾.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 ‘집행지침’에서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을 구분하여 정의⁴⁾하고 있고, 출연금 성격에 따라 운영방침⁵⁾까지도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를 구분하여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타 기관의 입법례⁶⁾를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진흥원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기관운영비로 지급된 출연금

3)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2022.5.

4) 기관운영출연금(350-01) : 기관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사업출연금(350-02) :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5)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출연기관의 기관운영출연금은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6)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관련 타 기관 입법례

법률명	기관명	지원 근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한국 로봇산업 진흥원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을 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진흥원의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그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⁷⁾.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p.119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항 중 “운영”을 “사업 및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 ⑤ (생 략)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 흥원의 <u>운영</u>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 ----- <u>사업 및 운영</u> ----- ----- -----.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